

의안번호	제 호
의 결 년 월 일	2019. . . (제 회)

의 결 사 항	
------------------	--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고 성 군 수
제출연월일	2019. 10. 7.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 호
----------	--------

제출연월일: 2019. 10. 7.

제 출 자: 고성군수

1. 개정이유

- 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 시 지방보조사업자가 체납액이 있어도, 보조사업의 정산 전까지 체납을 완납하는 조건으로 보조금을 교부 결정할 수 있도록 교부조건을 완화하고,
- 나. 지방보조사업자 보조금 사용 시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 및 소상공인의 카드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로페이’ 사용 근거 마련

2. 주요내용

- 가.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단서조항 및 교부조건 신설(안 제16조, 안 제17조)
 -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이 있는 경우 사업정산 전까지 체납의 완납
- 나. 지방보조금 사용 시 ‘제로페이’ 사용 근거 마련(안 제19조의2)
 - 지방보조금을 사용할 때에는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체크카드) 또는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제로페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32조의2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1) 기획감사담당관(법무개혁담당): 규제심사
- 2) 복지지원과(여성가족담당): 성별영향분석평가

라. 기 타

- 1) 입법예고: 고성군 공고 제2019-1182호
 - 가) 예고기간: 2019. 9. 3. ~ 2019. 9. 23.(20일간)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3)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4)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불임

4. 본 문: 불임과 같음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5호 중 “체납여부”를 “체납여부.”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7조제4호에 따른 교부조건을 명시하는 경우에는 교부결정할 수 있다.

제17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이 있는 경우 사업정산 전까지 체납의 완납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보조금 결제 전용카드 사용 등)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금을 사용할 때에는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체크카드) 또는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제로페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인건비 성질의 경비
2.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 또는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3. 그 밖에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따로 정하는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용 등)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금을 사용할 때에는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체크카드) 또는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제로페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인건비 성질의 경비
2.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 또는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3. 그 밖에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따로 정하는 경우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고성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2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부결정에 따른 단서조항 신설 및 보조금 결제 사용 근거
마련이 주된 내용으로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

작성자: 기획감사담당관 김 주 원

□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① 지방보조금(제17조제1항 및 제23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지방보조사업(제17조제1항 및 제23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출 또는 교부받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성격, 지방보조사업자(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비용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되어야 한다.

②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제17조제1항에 따른 지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없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리 제32조의3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
2.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할 때
3.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지방의회에 의견을 제출할 때
4.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자원분담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때
5. 제32조의7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유지 여부를 결정할 때

④ 지방보조금은 공모절차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제32조의3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부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령이나 법령의 명시적 위임에 따른 조례에 지원 대상자 선정방법이 다르게 규정된 경우
 2.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대상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따라 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서 그 신청자가 수행하지 아니하고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이 중복 교부되거나 부적격자에게 교부되지 아니하도록 지원이력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⑥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및 교부 신청과 교부 결정 등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9조(보조금 결제 전용카드 사용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집행할 때에는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체크카드) 또는 소상공인 간편결제 시스템(제로페이)를 사용하여야 한다.